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0월 10일

나. 발 의 자: 이순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순우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 제6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안 제7조)
- 보고 및 검사 등(안 제12조)
-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개정조례안은

- 현행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보고 및 검사 등의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법 제13조의3에 의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기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더불어 권고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오염도검사기관에 검사결과를 의뢰하도록 하고, 조례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다 전문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
----------	-----

발의연월일: 2023. 10. .

발 의 자 : 이순우, 전승관, 양송이
이규선 의원(4인)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 제6조)
- 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안 제7조)
- 다. 보고 및 검사 등(안 제12조)
- 라.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10. 12.~ 10. 16.)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영등포구”를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시설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이하“법”)”을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공동주택”이란 구에 위치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 주택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영등포구민(이하“구민”)”을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소유자 등””을 “이하 “소유자등””으로, “위한”을 “위하여 법 제5조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6조를 제10조로 한다.

제8조를 제12조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법 제7조에서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로, “**조치(이하“개선명령”이라 한다)**”를 “**조치**”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자 등**”을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조**”를 “**다중이용시설 중 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약계층”을 “건강취약계층”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에”를 “관리를 위하여”로,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을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업무는 법 제13조의3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p> <p>2.“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p> <p>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p>	<p>제2조(정의) ----- -----.</p> <p>1.----- --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시설로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 -----.</p> <p>2.“공동주택”이란 구에 위치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 ----- -----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p> <p>① ----- -----</p>

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이하 “소유자등”-----

위하여 법 제5조에서 정한 -----
-----.

<삭 제>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법 제7조에서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제10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관리를 위하여 -----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 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생략)

② -----

----- 다중이용시설 중 법 제3조-----
-----.

③ ----- 건강취약계층-----

-----.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